



제422회국회(임사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23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의 근거 신설	2
2.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의 근거 신설 등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8.
3. 회부연월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며,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들의 출연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신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의 근거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출액 등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하고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이용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과 그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u>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중 사업자의 매출액,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상시 근로자 수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9조의3에 따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현행	개정안
	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¹⁾.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비용 부담을 경감²⁾하기 위하여 결제 중간단계를 최소화한 소상공인 간편결제³⁾시스템 ‘제로페이’ 사업⁴⁾을 2018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9년부터 전국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율(계좌결제 기준)은 연매출액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5%가 적용됨.

3) ‘간편결제 서비스’란 이용자가 미리 결제 수단, 즉 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를 입력해두고 지문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인증만으로 결제를 실행하는 서비스를 뜻함(조영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보(통권 40호), pp.40-43, 2019.4.).

4)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제로페이의 운영, 관리 등은 민간사업자들의 출연을 통해 설립된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수립, 제도개선 및 예산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간접보조사업자인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진행을 관리·감독함(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350-359, 2022.8.). 동 사업은 2023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2024년 이후 국고 지원은 중단되었음.

으로 확대·운영하였으며,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가맹점 수는 194만 개사⁵⁾에 달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출액 등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이용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상시 근로자 수 파악을 통한 소상공인 해당여부의 판단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의 차등 적용 등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⁶⁾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결제시스템을 법률에 반영하여 운영한 사례가 없고 간편결제 시장이 이미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⁷⁾되어 있으며, 소

5) 해지된 가맹점은 제외한 수치임(출처: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www.zeropay.or.kr)).

6)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04호, 2025.1.21., 일부개정, 2025.7.22. 시행 예정)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및 제29조(벌칙)에서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과세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7)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간편지급(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규모는 일평균 2,971만 건, 9,39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0%, 11.0% 증가하였으며, 2024년 6월말 기준 간편지급(간편결제) 서비스 조사대상 업체는 57개에 달함(출처: 한국은행, “2024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2024.9.23.).

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제화는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와의 형평성 또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의 근거 신설 등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⁸⁾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	개정안
	1.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u> 2.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u> 3.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의 모집 및 관리</u> 4.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개발</u> 5.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u> 6.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u> 7.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u> 8. <u>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u> ⑥ <u>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진흥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u> ⑦ <u>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⑧ <u>그 밖에 진흥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 설> 제9조의4(<u>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특례</u>) <u>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 <신 설> 제9조의5(<u>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u>)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u>

현행	개정안
	<u>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개정안에 따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게 되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의무이행확보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시스템 이용자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개정안 부칙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구법인)이 이사회 의결로 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신법인)으로 하여금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규정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대행점 요건⁹⁾¹⁰⁾에 대한 예외를 이 법에 특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더라도 정부 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대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

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10)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영업자 자격을 득하여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¹¹⁾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판매대행점 업무는 금융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타 운영대행사¹²⁾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11)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자금융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운영대행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통보받은 바 있음(감사원, “감사보고서-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II”, 2023.12.).

12) ‘판매대행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고, ‘운영대행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 가맹점 관리,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포함하여 한국조폐공사, KT 등 14개 업체가 있음.